개정 2012.12.18.,2017.8.29.>

- 제4조(현장실습의 개설) ① 현장실습은 총장이 개설하며, 필요에 따라 학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.<개정 2003.11.25.>
 - ② 학장이 현장실습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현장실습 개설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3.11.25.>
 - 1. 개설과정 및 학점수
 - 2. 현장실습기간 및 실습시간
 - 3. 현장실습신청서 접수기간
 - 4. 현장실습 지도교수<개정 2003.11.25.>
 - 5. 현장실습기관 및 관리자
 - 6. 기타 개설에 필요한 사항
 - ③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장체험연수 등의 현장실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03.11.25.>
- 제5조(신청자격)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. 다만, 졸업예정학기 해당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02.5.21.,2012.5.22.,2012.12.18.>
 - 2. 우리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<개정 2012.5.22.>
 - 3.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
- 제6조(신청 및 선발) ①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02.5.21.,2003.11.25.,2005.8.23., 2011.4.13.,2012.5.22.,2015.1.13.>
 - ② 총장은 우리 대학교 및 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.<개정 2003.11.25.,2012.5.22.>
 - ③ 전항의 선발을 위해 필요시에는 실습시작 전에 해당 학부(과)장·전공주임교수가 현장실습기관의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03.11.25.>
 - ④ 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등록금(계절학기는 수강료)을 납부하여야 하며,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.<개정 2012.5.22.>
 - ⑤ 삭제 <2005.8.23.>
 - ⑥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장기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.<신설 2015.1.13.>
- 제6조의2(수강신청) ① 현장실습 과목은 정규학기(학점단위등록 포함)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<신설 2012.5.22.>
 - ② 장기현장실습 기간 중인 학생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 넷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,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이 중첩되어도 인터넷 강좌는 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방학 중에 개설되는 현장실습은 계절학기 인터넷 강좌를 포함하여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<신설 2012.5.22., 개정 2015.1.13.,2016.6.14.>
 - ③ 단기 및 중기 현장실습은 계절학기 과정으로 신청한다.<신설 2012.5.22., 개정 2015.6.16.>
 - ④ 주말 시간에 편성된 종합설계(캡스톤디자인)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<신설 2016.6.14.>
- 제7조(실습 지도) ① 해당 학부(과)장·전공주임교수 및 취업처장은 실습생의 작업환경. 근무상